

환경부 공고 제2011-382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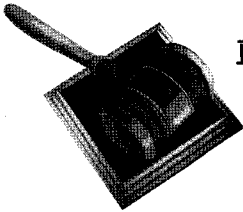
2011년 10월 26일 / 환경부장관

### 1. 개정이유

한·미 FTA 협상 후속조치로서 1만대 미만의 차량을 제작하는 제작사(수입사)의 배기관가스 평균값 수치를 규정함.

### 2. 주요내용

경자동차, 소형승용차(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의 배기관가스 평균값은 연간 4,5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47g/km, 연간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0.0369g/km를 각각 적용.



환경부 공고 제2011-372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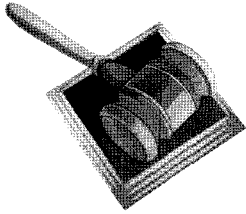
2011년 10월 20일 / 환경부장관

###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과 주차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 시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의무를 면제(안 제17조).
- 나.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매립기준을 강화(안 별표 1 제2호 및 별표 5 제4호).
- 다. 의료폐기물 중 '동물의 사체'를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 5 제5호).
- 마. 폐목재 침목을 절단·세척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기름성분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활용방법으로 인정(안 별표 5의 2 제19호).
- 바. 폐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방법 및 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기준 등을 마련(안 별표 5의 2 제16의 2호 및 별표 7 제5호 등).



## 환경부 공고 제2011-37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년 10월 20일 / 환경부장관

###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목재 침목의 재활용 방법을 확대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폐목재 침목의 재활용 방법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의 제거하기 위한 세척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안 별표3).
- 나.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체계에 맞도록 조정하고, 대상 업종 및 규모를 추가함(안 별표5).
- 다.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함(안 별표8).

환경부 공고 제2011-367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년 10월 11일 / 환경부장관

### 1. 개정이유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를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 나. 신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일부 기준 조정

- 1) 추가된 4개 다중이용시설(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함.
- 2) 재실자 밀도가 높은 도서관, 영화관, 학원, PC방 중 자연환기가 어려워 기계환기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500ppm으로 완화함.
- 3) 라돈 기준값의 단위를 국제단위계(SI)의 단위로 변경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